

NEWS LETTER

2026-01-30

Legal Issue

-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임박,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유럽 디지털 규제 격변: DSA-GDPR 상호작용 지침과 플랫폼의 대응 전략

MINWHO News

- 김경환 대표변호사, WACON 2025 '공로상(연구 부문)' 수상
-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각각의 진행
- 양진영 대표변호사, OVAL KOREA 제18회 포럼 참여하여 AI 시대 거버넌스와 윤리 과제 제시

Business CASE

 법무법인 민후



Legal Issue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임박,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김경환 대표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산업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기업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됐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AI의 '진흥'과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AI 법(AI Act)'을 시행하며 규제의 닻을 올렸고, 대한민국 역시 AI기본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의 AI기본법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를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자사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을 식별하고 분류해야 한다. AI기본법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이다.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와 그렇지 않은 AI를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AI 자산을 전수 조사해 고위험 영역에 속하는지, 혹은 금지된 AI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고위험 AI를 운영한다면 적합성 평가, 이용자 고지 의무 등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둘째,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AI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감독할 조직과 프로세스, 즉 'AI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는 정보기술(IT)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경영진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AI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는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내부적으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AI'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데이터의 '무결성'과 '저작권·개인정보'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AI의 연료는 데이터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출처는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된다.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수집된 데이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I기본법 시행과 무관하게 기업은 자사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권법을 준수했는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는 완벽한지, 데이터에 편향성은 없는지를 꼼꼼히 감사해야 한다. 데이터 출처를 명시하고 학습 데이터의 정당성을 입증할 문서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향후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넷째, 제3자 검증을 통한 '신뢰성 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내부 점검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업은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 배포에 이르기까지 외부 기관을 통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검증받는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이나 유해 콘텐츠 생성에 대한 기술적 차단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복적으로 테스트해야 한다. 미리 준비된 기업만이 법 시행 직후 혼란 없이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의 신뢰를 선점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규제를 혁신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인식하곤 한다. 그러나 파급력이 큰 AI 기술에 있어 적절한 규제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가드레일과 같다.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윤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업만이 'AI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히 준비된 기업에 AI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유럽 디지털 규제 격변: DSA-GDPR 상호작용 지침과 플랫폼의 대응 전략

현수진 변호사

2025년 9월 12일,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지침(Guidelines 3/2025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DSA and the GDPR Version 1.1)을 발표했다. 위 지침은 DSA-GDPR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중대한 실무적 함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위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가 DSA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GDPR의 원칙과 의무를 어떤 경우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DSA가 온라인 플랫폼에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맞으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EDPB의 일관된 입장이다. DSA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처리 활동은 여전히 GDPR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DPB 지침이 제시하는 DSA-GDPR 상호작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적인 법적 근거 부재

EDPB는 DSA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DSA 의무 이행을 위한 처리 활동이라도 반드시 GDPR에 따른 적법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DSA상 명시된 의무(예: 거래자 신원 확인, 광고 투명성 보고)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의무(Art 6(1)(c))'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DSA 목표에 부합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안전 조치는 '정당한 이익(Art 6(1)(f))'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광고, 쿠키, 추천 알고리즘 등 이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기능은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Art 6(1)(a))'가 요구된다.

2. 민감정보와 미성년자 광고의 금지

DSA는 인종, 건강 등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겟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추론된 경우에도 GDPR 제9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리를 피해야 한다. 사실상 광고 목적으로는 민감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또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 광고 역시 전면 금지된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연령만을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DPB는 연령 검증 과정 자체도 개인정보 처리이므로,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3. 자동화 결정 및 프로파일링의 투명성

추천 시스템이나 콘텐츠 조정 도구를 운영할 때는 GDPR 제22조가 규정하는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결정 관련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추천의 주요 매개변수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시 인간의 개입(Human Review)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EDPB는 투명성 의무가 '동의'를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DSA에 따라 추천 시스템에 비(非)프로파일링 기반 옵션을 제공하더라도, 쿠키나 추적 기술 사용에 필요한 GDPR 및 ePrivacy 규정상의 유효한 동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선택을 오도하거나 방해하는 다크 패턴(Deceptive Design Patterns)은 DSA와 GDPR 모두에서 금지된다.

4. 신고·불만 처리·거래자 확인 등 DSA 절차의 개인정보 준수

불법 콘텐츠 신고(DSA 제16·17조), 불만 처리(제20·23조), 거래자 정보 확인(제30조), 광고 투명성 저장소 운영(제26조) 등 DSA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바, 이때는 '목적 제한'과 '최소 수집'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예컨대, 신고자의 신원은 저작권 침해 입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자동화된 불만 처리 시스템은 인간 검토단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광고 투명성 저장소를 운영할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해야 한다.

5. 위험평가와 감독체계의 이원화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이나 검색엔진은 매년 서비스 운영에 따른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데, 개인정보가 관여되는 경우 그 과정은 GDPR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와 연계해서 수행해야 한다.

두 규제의 감독 주체도 다르다. GDPR은 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DPA)가, DSA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DSC)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두 체계의 감독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준법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실무 제언

EDPB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GDPR 우선' 원칙을 명심하고, DSA 의무 이행 시에도 GDPR의 기본기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은, DSA-GDPR 처리 활동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다. 모든 DSA 의무(광고 투명성, 위험 평가, 거래자 추적 등)에 대해 어떤 개인정보가 관련되며, 해당 처리의 GDPR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보존 및 보호 조치는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DSA 때문'이라는 모호한 근거 제시를 피하고, 최소한의 데이터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타겟 광고와 관련하여 민감정보는 물론,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활용한 타겟팅까지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타겟 광고 기능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DSA가 요구하는 투명성 의무와 GDPR의 정보 주체 통지 의무가 중복되거나 상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고지 사항을 일원화하여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파일링, 추천 시스템 변경, 시스템적 위험 평가 등에는 GDPR의 DPIA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DSA 시행과 EDPB 지침 발표로 유럽의 데이터 규제 환경은 한층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 유럽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EDPB 지침을 참고하여,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수진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hyunsj@minwho.kr





MINWHO NEWS

김경환 대표변호사, WACON 2025에서 '공로상(연구 부문)' 수상

[WACON 2025]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연구 부문 공로상 수상



MINWHO NEWSLETTER

MINWHO NEWS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강의 진행

- 1)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인정보, 저작권, 생성형 AI' 관련 온라인 강의 촬영
- 2) 한국언론진흥재단 'AI 활용 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오프라인 강의 진행



MINWHO NEWS

양진영 대표변호사, OVAL KOREA 제18회 포럼 참여 'AI 시대 거버넌스와 윤리 과제' 제시

양진영 변호사, 'AI와 인간의 공존: AI 시대의 거버넌스, 법적·윤리적 쟁점' 주제로 연사

OVAL KOREA는 지난 1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제18회 포럼을 개최하여,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구도와 함께 AI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법적·윤리적 쟁점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술 발전의 현황을 짚는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제도적 과제를 함께 논의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포럼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민간이 이끄는 AI 패권 경쟁: 한·중·일 전략 지도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한·중·일 3국의 AI 전략과 기술 경쟁 구도를 살폈고, 2부에서는 'AI와 인간의 공존: AI 시대의 거버넌스, 법적·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AI 확산에 따른 규범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기술과 제도, 윤리를 함께 다룬 점이 이번 포럼의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2부 연사로 참여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흐름을 설명하며, 향후 인공일반지능(AGI) 논의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 진보가 결국 인간과 AI의 관계 설정, 즉 공존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시대에는 문제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무르기보다,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편향성, 예측의 불확실성, 자동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 확대,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등 AI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는 기술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 공공선, 기술의 목적성을 핵심 윤리 원칙으로 제시하며,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AI 경쟁과 책임이라는 두 축을 함께 조명하며, 기술 발전의 방향과 사회적 기준을 동시에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2. 상표법위반 고소 사례(불송치 결정) - 서비스업 브랜드 운영 기업을 대리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3. 직무발명 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4.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정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5.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복제 주장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중지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6.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멀티미디어 음원 상품 활용의 위법성 등 법률 검토 자문
(저작권 침해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 여부)
7. 해외 본사에서 수립된 제품 공급정책의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불공정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방안 법률 자문
8.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문 : 고객 이메일 혼동 발송의 법적 책임 여부 (고객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근거)
9.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형토큰 및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여부, 국내 법률 적합성 관련 법률자문
10. 전직금지약정 위반 내용증명 수령에 따른 대응 및 영업비밀 등 제반 사항 법률검토자문



M 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